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으로 공공건축추진단 소속 한시정원 6명(존속기한 2022년 6월6일) 중 공공건축추진단장을 제외한 잔여 5명의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,

조직운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국의 명칭을 시설사업국으로 변경하고, 공공청사기획과와 공공시설건축과를 시설사업국에 이전 배치하며, 녹색에너지환경과는 도시계획국으로 이전 배치하는 한편,

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4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의 “도시정책과·도시성장추진과·도시공간건축과·도시공간건축과”를 “도시정책과·도시성장추진과·도시공간건축과·녹색에너지환경과”로, “도시성장추진과장 및 도시공간건축과장”을 “도시성장추진과장, 도시공간건축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6항의 “스마트도시팀장”을 “녹색에너지환경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의2호 및 제3의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.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총괄
2.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·시행
3.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
4.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5.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6. 상·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
7.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
8. 전기·가스·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9. 신·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도입

10. 하천의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

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스마트도시팁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

2.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

3.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4.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

5.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

6.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7.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8.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

9.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10.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

11.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

12.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기반시설국”을 “시설사업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반시설국장”을 “시설사업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반시설국”을 “시설사업국”으로, “녹색에너지환경과”를 “공공청사기획과”로, “녹색에너지환경과장”을 “공공청사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6항의 “녹색에너지환경과장”을 “공공청사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한다.

1.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

2.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

3.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

4. 국가·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

5. 국가·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특화에 관한 사항

6.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

제13조의 제목 “(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)”을 “(공공시설건축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공건축추진단장”을 “공공시설건축과의 과장”으로, “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”를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”로, 같은 조 제2항 “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, 공공청사기획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”를 “공공시설건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, 제5항,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(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명)은 2023년 6월 4일까지 존속한다.

현행	개정안
제6조(도시계획국) ① (생략)	제6조(도시계획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도시계획국에 <u>도시정책과·도시성장촉진과·도시공간건축과 및 스마트도시팀을 두되,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도시성장촉진과장 및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스마트도시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</u>	② ----- <u>도시정책과·도시성장촉진과·도시공간건축과·녹색에너지환경과</u> ----- ----- <u>도시성장촉진과장, 도시공간건축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스마트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	⑥ <u>녹색에너지환경과장</u> ----- ----- -----
1. <u>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</u>	1. <u>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총괄</u>
2. <u>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</u>	2. <u>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·시행</u>
3. <u>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	3. <u>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</u>
3의2. 청내 공공데이터의 제공	<삭 제>

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의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 괄 3의3.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 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 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4.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.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.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7.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.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구 축 9.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10.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신 설>	<삭 제> 4.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 리에 관한 사항 5.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. 상·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.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 항 8. 전기·가스·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. 신·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 력망 도입 10. 하천의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⑦ 스마트도시팀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. 1.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	및 설치에 관한 사항 2.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.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 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 5.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6.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.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.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9.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.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구 축 11.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12.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(기반시설국) ① 기반시설국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	제7조(시설사업국) ① 시설사업국 장-----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.	----- ----- -----.	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	
② <u>기반시설국</u> 에 사업관리총괄 과 · 교통계획과 · 광역도로과 및 <u>녹색에너지환경과</u> 를 두며,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교통계획과장, 광역도로과장 및 <u>녹색에너지환경과</u> 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② <u>시설사업국</u> ----- ----- --- <u>공공청사기획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공청사기획과</u> 장----- -----.	8. <u>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 항</u>	<삭 제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9. <u>전기 · 가스 · 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⑥ <u>녹색에너지환경과</u>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<u>공공청사기획과</u> 장----- -----.	10. <u>신 · 재생에너지 및 지능형 전력망 도입</u>	<삭 제>
1. <u>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 의 총괄</u>	1. <u>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</u>	11. <u>하천의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2. <u>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 · 시행</u>	2. <u>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 항</u>	제13조(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)	제13조(공공시설건축과)
3. <u>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</u>	3. <u>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 리 및 예산관리</u>	① <u>공공건축추진단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</u>	① <u>공공시설건축과의 과장－ 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 한다.</u>
4. <u>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 리에 관한 사항</u>	4. <u>국가 · 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 한 사항</u>	② <u>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 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, 공공청사기획과장 및 공 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</u>	② <u>공공시설건축과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.</u>
5. <u>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</u>	5. <u>국가 · 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특화에 관한 사항</u>	③ <u>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</u>	<삭 제>
6. <u>상 · 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</u>	6. <u>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</u>	2. <u>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 리 및 예산관리</u>	<삭 제>
		3. <u>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</u>	<삭 제>

<u>항</u>	
4. <u>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</u>	<u><삭 제></u>
<u>지원</u>	
6. <u>국가·지방청사 등 공공청사</u>	<u><삭 제></u>
<u>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</u>	
<u>한 사항</u>	
9. <u>국가·지방청사 등 공공청사</u>	<u><삭 제></u>
<u>특화에 관한 사항</u>	
10. <u>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</u>	<u><삭 제></u>
<u>한 사항</u>	
⑤ <u>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</u>	<u><삭 제></u>
<u>항을 분장한다.</u>	
1. <u>문화·예술시설의 배치계획</u>	<u><삭 제></u>
<u>및 설치에 관한 사항</u>	
2. <u>복지·보건시설의 배치계획</u>	<u><삭 제></u>
<u>및 설치에 관한 사항</u>	
3. <u>체육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</u>	<u><삭 제></u>
<u>치에 관한 사항</u>	
4. <u>문화·예술, 복지·보건 및</u>	<u><삭 제></u>
<u>체육시설의 설계·시공 및 준</u>	
<u>공 등에 관한 사항</u>	
5. <u>문화·예술, 복지·보건 및</u>	<u><삭 제></u>
<u>체육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</u>	
<u>관리</u>	
6. <u>문화·예술, 복지·보건 및</u>	<u><삭 제></u>
<u>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</u>	

<u>사항</u>	
8. <u>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</u>	<u><삭 제></u>
<u>계획의 수립·시행</u>	
9. <u>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</u>	<u><삭 제></u>
<u>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</u>	
<u>항</u>	
10. <u>도시 내 역사공원설치 관련</u>	<u><삭 제></u>
<u>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</u>	
<u>관한 사항</u>	
11. <u>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</u>	<u><삭 제></u>
<u>시행하는 광역도로건설 관련</u>	
<u>문화재조사에 관한 사항</u>	
12. <u>문화·예술, 복지·보건 및</u>	<u><삭 제></u>
<u>체육시설 등의 특화에 관한</u>	
<u>사항</u>	
⑥ <u>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</u>	<u><삭 제></u>
<u>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</u>	
<u>같다.</u>	

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

(제13조 관련)

공공시설건축과(존속기한: 2023년 6월 30일)

총계	5
일반직 계	5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2
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	1